

| | |
|-----|--------------------------|
| 접 수 |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8 월 2 일

청 원 인

성 명 : 문혁진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 | | | | | | 의 장 |
|-----|------|-----|-----|-----|-----|-----|
| 담당자 | 청원담당 | 과 장 | 국 장 | 차 장 | 총 장 | |
| | | | | | | |

청원소개의견서

| | |
|-------|---------------------|
| 청원인 | 주소 : |
| | 성명 : 문혁진 |
| 건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소개년월일 | 2016년 8월 2일 |

소개의견

청원인 문혁진 외 31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 소속 청소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는 2016년 8월 제14회 정기회의 청소년 국회를 개최하여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그 중 하나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종이 신문보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게는 독자의 읽을 권리와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의 재정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인해 과도한 광고가 기사에 노출되어 독자가 신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독자의 읽을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는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신구문대조표

| 현행 | 개정문 |
|--|---|
| 제 6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 제 6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기사배열책임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배열하여야 한다. 1. 광고가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 |

| | |
|--|--|
| | <p><u>도록 인터넷신문의 상하좌우로부터 1cm 이상의 간격을 두어 광고를 게시하여야 한다.</u></p> <p>2. <u>인터넷신문 내부에는 본문과 1cm 이상 간격을 두더라도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u></p> |
|--|--|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 따르면 신문사는 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하지만 그 기준이 관련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또 재정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문사들의 과도한 광고로 인해 독자의 읽을 권리와 알 권리가 침해되어 많은 독자가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로 독자들이 정작 보고 싶은 내용은 광고가 아닌 인터넷신문의 기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터넷신문을 보면 광고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심지어 인터넷뉴스의 기사 위에 광고가 게시되는 경우도 빈번함. 이러한 인터넷 신문의 무분별한 광고 게시로 인해 정작 보고 싶은 내용을 보지 못하는 독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임. 위 사례들을 통해 인터넷신문을 이용하는 독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모든 대한민국의 인터넷신문 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무분별하게 인터넷신문에 게시되는 많은 광고에 방해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함.

2. 주요골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6조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기사배열책임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배열하여야 한다.

1. 광고가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인터넷신문의 상하좌우로부터 1cm 이상의 간격을 두어 광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인터넷신문 내부에는 본문과 1cm 이상 간격을 두더라도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신구문대조표

| 현행 | 개정문 |
|---|---|
| 제 6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6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②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기사배열책임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배열하여야 한다.

1. 광고가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인터넷신문의 상하좌우로부터 1cm 이상의 간격을 두어 광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인터넷신문 내부에는 본문과 1cm 이상 간격을 두더라도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

청원인 성명 : 문혁진

청원인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193-13

청원인 전화번호 : 070-4241-1104